

불법촬영 · 유포피해의 이해

젠더기반 폭력이란? (Gender Based Violence, GBV)

사회적으로 부여된 여성성과 남성성을 바탕으로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통칭하는 개념.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됨.

- 성폭력, 성적 착취, 강요된 성매매, 인신매매처럼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가해지는 폭력
- 가정폭력, 성기 절단, 자참금 살인, 명예 범죄같이 여성의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
- 전쟁 무기로서의 강간 등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폭력

* 출처 : UN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



Q 불법촬영 · 유포피해는 젠더기반 폭력인가요?

A 그렇습니다. 여성의 신체와 남성의 신체는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피해촬영물로 소비되는 신체는 주로 여성의 신체이며, 남녀가 다 노출되더라도 여성이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습니다. 가해자 역시 이 점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젠더기반 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한 이유

경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가해자 검거가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는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수사한 수사관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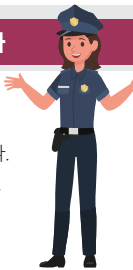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수사관의 이해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는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를 이렇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모(화장, 치마, 매니큐어 등)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민감한 질문이라면 질문이 필요한 맥락을 설명합니다.
- 감정적 기복이 있을 때는 기다립니다. 울거나 대답을 똑바로 못하면 채근하지 말고, 피해자가 진정하도록 시간을 줍니다.
- 동료 경찰이 피해자를 배려해 조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이해하는 조직 문화를 만듭니다.

피해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사 절차를 설명합니다.
- 가명 조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 형사 고소 과정과 관련 용어 (기소, 송치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 수사 절차상 불가능한 조치 (영장 기각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 재판까지 사용되는 진술서의 중요성을 알립니다.
- 피해자 권리를 안내하고 안내문을 이해하는지 확인합니다.



협력 기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상담 연락처 02-735-8994
 상담 시간 평일 10:00 ~ 17:00
 지원 내용 상담, 삭제 지원, 수사지원 등
www.women1366.kr/stopps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상담 연락처 02-817-7959 / hotline@cyber-lion.com
 상담 시간 평일 13:00 ~ 17:00
 지원 내용 상담, 삭제 지원, 수사지원, 법률 지원, 심리 치료 연계 지원 등
www.cyber-lion.com

한국성폭력 상담소

상담 연락처 02-338-5801
 상담 시간 평일 10:00 ~ 17:00
 지원 내용 성폭력피해 생존자상담 및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
www.sisters.or.kr

한국여성의전화

상담 연락처 02-2263-6464,5
 상담 시간 평일 10:00 ~ 17:00
 지원 내용 전화 · 면접 · 이메일 상담, 무료 법률 상담
www.hotline.or.kr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상담 연락처 02-335-1858
 상담 시간 평일 10:00 ~ 17:00
 지원 내용 심리적 지원, 법적 지원, 의료적 지원, 기타 지원
<http://womenlink.or.kr>



문의 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 02-2133-5329

본 리플렛의 내용은 '불법촬영 · 유포피해 대응가이드(시민편, 경찰편)'을 재구성하였습니다.

I · SEOUL · U

불법촬영 · 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경찰편

당신이 첫번째 조력자입니다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더 조심해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지요? 성관계 영상을 찍자는 파트너의 제안에 응했거나 자진해서 성적인 사진을 찍어 보았으므로 유포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셨는지요?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피해자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불법촬영 · 유포피해는 사전 예방이 어려우며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폭력입니다. 우리 사회에 피해촬영물이 규제 없이 음란물처럼 유통되는 온라인 시장이 존재하고 이를 소비하는 실태로 인해 발생합니다.

“ 당신이 첫번째 조력자입니다. ”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제도권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조력자는 경찰입니다. 경찰은 피해회복 과정의 시작부터 세상과 피해자 사이 관계 설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피해회복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사건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따라 피해자는 용기를 잃기도, 얻기도 합니다. 경찰은 범인 검거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과정을 통해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과정을 함께하는 첫번째 조력자입니다.

“ 피해회복은 당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의 검거, 처벌은 피해회복 단계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범인 검거나 처벌 이외에도 수사 과정에 필수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증거 불충분이나 단서 부족으로 검거에 실패하더라도 수사관이 젠더기반 폭력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선입견 없이 수사할 때, 피해자는 수사 기관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느끼고 비로소 본인의 일상이 안전하다고 인지합니다.

경찰이 내가 겪은 폭력과 부당함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 걸음을 뒀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피해 유형별 지원방법

불법촬영

누군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한 피해

“공중화장실 옆 칸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들렸어요. 바닥을 보니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가 제 쪽을 향해 나와 있었어요. 비명을 지르자 누군가 후다닥 뛰쳐나갔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 시 유의 지점

- 불법촬영에 사용된 기기를 압수 수색합니다.
- 온라인 저장 공간(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 클라우드 등) 역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 가해자에 대한 단서가 없는 경우, 불법촬영이 발생한 장소 근처를 조사합니다.
- 차량 블랙박스, CCTV, 카드 사용 내역이 존재하는 창구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 불법촬영 가해자의 저장 공간에서 발견된 또 다른 피해자의 피해촬영물에 대해서는 경찰이 인지 수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

- 1 불법촬영에 사용된 스마트폰 및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압수 조치를 원합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경우, 압수가 어려운 이유를 피해자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 2 현장에서 발견했을 경우, 가해자를 붙잡고 있는 동안 경찰이 빠르게 출동하여 상황에 개입해 주기를 바랍니다.

유포피해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촬영물이 몰래 유포되거나, 함의하에 촬영된 성적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된 피해

“예전 남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는데 헤어질 때 지워 달라고 했고 당연히 지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보았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 시 유의 지점

-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플랫폼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증거 자료 제출에 서툴러도 다그치지 않고 안내합니다. 음란물 유포죄로 신고해 성기 노출 장면을 캡처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가 고통받을 수 있으므로 여성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함의하에 찍은 촬영물이라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 재유포자에 대한 신고는 음란물유포죄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14조를 적용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

- 1 피해촬영물의 삭제 지원 센터에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2 피해촬영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본인임을 입증해야 한다며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 3 유포 플랫폼이 해외 서버 포르노사이트나 SNS의 경우 수사 공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조기 종결하지 않습니다.
- 4 피해자가 아이디를 특정한 경우, 아이디 외의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며 신고를 반려하지 않습니다.

피해촬영물 삭제의 중요성

사이버 공간에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일단 유포되면 언제까지, 어디까지 유포될지 모릅니다. 피해촬영물이 성적으로 소비되는 문화로 인해 피해자에게는 단 한 건이라도 남아 있는 것이 큰 고통입니다. 경찰이 직접 삭제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가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피해촬영물 삭제는 피해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삭제 지원 받을 수 있는 곳

-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02-735-8994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해당 기관에서 지원을 받아도 사이버 공간 특성상 100% 삭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설명합니다. 더불어 지원 시작 후 곧바로 피해촬영물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퍼져 있는지 찾고, 플랫폼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삭제하기보다 기관이나 단체의 지원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삭제 지원 과정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지원 과정

- 1 웹하드에 유포되었을 경우 **해당 사이트** 에 직접 삭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 웹하드에서 피해촬영물 게시물의 링크·제목·콘텐츠 번호 등의 정보를 확보합니다.
 - 2 해당 사이트 내 신고 창구를 이용해 피해촬영물임을 알리며 삭제를 요청합니다.
 - 사이트 하단의 고객센터 이메일로 메일 발송
 - 해당 게시물 내의 신고 버튼을 이용해 신고
 - 사이트 내의 일대일 문의하기를 통해 신고
 - 사이트 내의 피해구제 센터 이용해 신고

- 2 불법 포르노사이트에 유포되었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 피해촬영물의 링크를 복사하고 영상이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합니다.
-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피해 구제 신청을 클릭합니다.
- 3 권리 침해 정보 심의 신청을 합니다. (본인 인증 후 피해촬영물이 게시된 링크와 캡처본을 첨부해 신고)

- 3 SNS에 유포되었을 경우 **해당 SNS의 신고 창구** 를 통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신고창구	주소
텀블러	가이드라인 침해 신고 창구 (신고시 신분증 첨부, 미성년자는 신분증 없어도 신고 가능)	https://www.tumblr.com/abuse
페이스북	사생활 보호권 침해 신고 창구	https://www.facebook.com/help/contact/144059062408922
트위터	개인정보 노출 신고 창구	https://help.twitter.com/forms/private_information
인스타그램	게시물이나 프로필 악용 사례 신고 창구	https://help.instagram.com/192435014247952?helpref=faq_content

유포협박

성적인 촬영물을 인터넷 공간 혹은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피해

“이별을 통보하니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뒀다며 헤어지면 유포한다고 협박합니다. 불안해서 헤어질 수가 있는데 계속 이대로 만나야 될까요?”

수사 시 유의 지점

- 피해촬영물이 유포되면 여성에게 훨씬 위협적으로 작용되는 사회 문화적 인식을 이용한 협박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찰의 긴급 체포, 압수 수색, 구속 등의 조치가 없다면 피해자 스스로 유포를 막을 수 있는 대응책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며, 협박을 통한 추가적인 피해촬영물 갈취나 성관계 요구 등의 2차 범죄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유포협박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연락이나 관계를 단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

- 1 불법촬영에 사용된 스마트폰 및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압수 조치를 원합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경우, 압수가 어려운 이유를 피해자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 2 현장에서 발견했을 경우, 가해자를 붙잡고 있는 동안 경찰이 빠르게 출동하여 상황에 개입해 주기를 바랍니다.

불안피해

성적촬영물이 몰래 촬영, 유포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는 피해

“예전에 남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는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까 걱정됩니다. 혹시 영상이 유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불안 심리의 원인

동의 없이 유포되는 피해촬영물이 음란물로 유통, 소비되는 실태에서는 누구도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언제 몰래 찍힐지, 유포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별개로 ‘불안’은 새로운 피해 유형입니다. 화장실을 갈 때마다 카메라를 찾아보거나 본인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을지 음란물 사이트를 뒤져보는 것도 불안피해 증상입니다.

필요한 조치

불안피해는 법적으로 기소할 수 없는 사례일지라도 범죄 예방의 차원에서 사건을 사소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범죄 예방 차원의 대응을 안내하고 피해자가 불안한 마음을 다룰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 ※ 유포피해가 우려되는 촬영물이 존재하고 가해자 의심되는 사람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영상에 대한 삭제 조치를 요청하고, 상대방이 삭제를 했다고 할 경우 대화를 녹취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서 보관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삭제를 완료했다는 각서를 받은 후 공증을 받아 놓습니다.
- 위 조치 외에도 예방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와 함께, 피해자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유관 기관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법률

불법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유포피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 2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유포협박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1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협박당하는 촬영물이 불법촬영물인 경우, 불법촬영 적용 법률도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신고 의지가 갖는 의미

피해회복은 피해를 인지하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신고는 제도권 내에서 회복을 시도하겠다는 피해자의 의지입니다.

불법촬영·유포 피해자의 경우, 사회에서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낙인 때문에 신고를 어려워합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촬영물이 노출되므로 신고에 대한 심적 부담이 큼니다. 불법촬영·유포피해가 다른 범죄 피해에 비해 신고율이 낮은 이유입니다.

용기를 내 경찰서에 찾아갔으나 신고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거나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회복 자체에 대한 의지를 잃고 좌절합니다. 불법촬영·유포 피해자의 신고 의지를 수사 과정에 담은 경찰을 기대합니다.

